#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16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 강경숙・황운하・김한규

조 국・김준형・이해민

이재정 · 김선민 · 박은정

김재원 · 강유정 · 신장식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,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.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,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, 관할청으로 하여금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),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0조제6항 신설),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(안 제28조제4항 신설)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-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5조제1항,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.

제27조제2항 중 "제20조제3항"을 "제20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,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 은 기관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0조(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	제20조(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		
치 등) ①・② (생 략)	치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5		
	조제1항, 제26조제1항 및 제28		
	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		
	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		
	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		
	할 것을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		
	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요청할		
	<u>수 있다.</u>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
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	<u>⑤</u> 제4항		
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			
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			
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			
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<u>⑥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:</u>		
	할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		
	른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고등학		
	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시		
	<u>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u>		
⑤ (생략)	<u>⑦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		
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	<u>®</u>		

및 분리조치의 방법・기간・장 소,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 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ㆍ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소 · 은폐 금지 등) ① (생 략)

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 ② -----제20조제4항----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 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(생략)

제28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한 신고의무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4	(생	략)

제7항

제27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 제27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 소・은폐 금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28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한 신고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 -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지역교 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 리지 아니하는 경우,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  -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